

이 자료는 2007년 5월 23일(수) 11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실제 브리핑 내용은 이 자료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

정책 브리핑 자료

2007. 5. 23(수)

건설공사 부실·부조리 방지대책

건설교통부
기반시설본부

□ '95년부터 도입된 전면책임감리제도와 관련하여 감리규모가 건설시장에서 1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감독체제를 대행하여 사실상 자리를 잡고 있어, 그간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및 보완을 하여 공사관리시스템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 등을 강구

※ '06 감리시장규모(공공부문) : 3,000여건, 1조원

○ 특히, 최근 발생한 전남 고흥군 거금도 연도교 상판 슬래브 붕괴사고, 일부 건설현장에서 책임 감리원과 시공사 공모에 의한 국고횡령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어,

- 건설감리제도 및 공사관리 등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 부실·부조리 방지대책을 수립하고

- 관련 법령개정,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앞으로 부실·부조리 행위자 및 소속업체는 건설현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

2.

그간 추진대책 및 문제점

- 성수대교 붕괴('94.10) 등 대형 건설사고 이후 부실·부조리 방지를 위해 전면 책임감리제 도입 및 관련자 처벌 강화 조치 시행
 - 그 결과 감리원에게 건설공사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공무원은 감리원 지도·감독에만 국한
- 그러나, 건설현장에서 감리원·시공자간 유착문화가 새로 발생하고, 감리원의 자질 및 도덕성 부족, 감리자의 합리적인 역할 정립 부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유형의 부실·부조리 발생
 - 감리원 현장근무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현장유착 개연성 증대
 - ※ 감리원 동일현장 평균 근무기간(국토관리청 경우) : 약 5년
 - 정부 등이 매년 부담하는 막대한 감리비용 규모에 비하여 감리제도 도입성파가 적고 다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 제기
- 특히, 각종 검측·확인·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감리원이 지켜야 할 법적책무를 관행적으로 불이행하는 사례 등 건전한 감리시스템 미정착
 - 책임감리제도 정착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현장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 점을 악용하는데도 감리원 처벌 수준은 미약하여 “권한은 있고 책임은 없다”는 지적 제기

【 감리 부문 】

1. 감리원 처벌 및 평가·교육 등 감리체질강화

- 전면적인 책임감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감리원의 감독기능이 강화되고 권한이 강화되었으나, 확인·검측 등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, 시공사 등과 유착, 또는 시공사 위에 군림하는 등 일부 폐단이 발생
- 또한 감리원은 자질과 함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자질·인성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미비

□ 감리원 및 감리업체 처벌강화

- 감리원의 도덕성 부족 등으로 실제 시공하지 않은 공사내용에 대해서 시공을 위장하여 국고를 횡령하는 등 국고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는 부조리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감리업체에 대하여 업무정지 기간 강화 : 현행 12개월 → 24개월
- 품질, 안전, 부실 등 감리수행지침상의 이행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이행 할 경우 해당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여 감리입찰시 불이익을 받도록 함

- 감리업체의 감리부실 등으로 인한 중대한 안전사고로 5명 이상 사망자 발생시 업무정지 기간 강화(현행 6개월 → 12개월) 하고, 안전사고 등으로 5년간 3회이상 업무정지시 등록취소
- 부조리 행위업체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, 부조리 행위가 발생한 당해 발주청 공사에 대해서 일정 기간(2년)동안 감리PQ 평가시 감점(3~5점)제도를 도입하여 당해 감리업체의 참여시 불이익을 받도록 함

□ 감리원 평가제도 도입 및 자질향상

- 감리원 자질 향상을 위한 현장감리원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스템을 '08년중 완비하여 전국적인 성과 공유시스템을 구축
- 감리원 상시 교육체제를 도입하여 감리협회, 건설기술교육원 등에서 2년마다 1주이상 교육실시토록하고 '95년 도입된 학·경력 기술자인정제도는 2007.9.1.부터 폐지
- 기술자 양산으로 인한 자질 및 기술능력저하 등 문제점 해소

2. 감리원에 대한 지도·감독권 강화

- 건설현장에서의 감리원의 역할은 감리업무수행지침서상에서 정하는 각종 검측·확인·구조계산·설계서 검토 등 감리원 고유의 업무를 직접 성실히 수행하여야함에도 시공사 또는 하도급 업체에게 전가시켜 검토하게 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음

□ 비상주감리원 구조검토 의무화

- 가교 등 가설시설물을 포함한 주요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회사와는 별도로 비상주 감리원(해당분야 구조기술사)이 의무적으로 구조검토를 실시토록하여 전문성, 객관성 확보

※ 의무적 구조검토 절차 불이행시 벌점부과 조항 신설 ⇒ 2~3점

□ 부조리 취약공종 확인절차 신설

- 가설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사 완료시 철거되어 확인이 어려우므로 발주청장이 구성하는 별도의 「검측단」을 운영하여 검측단이 실제 확인한 주योग설시설물에 한해 공사대금 지급

※ 주요 가설시설물 : 가교, 가도, 시스템 동바리, 암파쇄 방호시설 등

□ 건설공사 기성검사 시에는 공무원 확인

- 기성검사시 검측·확인소홀, 서류허위작성 등 형식적 또는 부실하게 업무처리하는 사례방지

□ 책임감리제도의 개선방안 수립('08)

- 그간의 책임감리제도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하고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및 보완방안을 강구하여 공사관리시스템을 내실있게 운용
 - 감리대상 규모를 공사 성격·공종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조정
 - 도공·수공 등 산하기관 발주하는 터널·교량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부분책임감리를 실시

【설계·공사관리 부문】

- 현재 가설시설물 시방서('02.5) 등 관련 규정 및 매뉴얼이 보급되어 있으나, 내용이 방대하여 숙지 및 소지가 불편하여
- 품질·안전·예산절감등을 위해서 설계의 품질이 가장 중요하나 현행 지방청 인력 및 조직은 주로 공사관리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, 설계내실화가 미흡한 실정

1. 안전·부조리 취약공종 점검 매뉴얼 마련

- 가설시설물 등 안전 및 부조리에 취약한 공종(가교, 가도, 시스템동바리 등)에 대해 업무점검 체크리스트 및 매뉴얼을 간소화

2. 부실설계 방지대책 강구

□ 설계전담부서 설치·운영

- 공사품질향상, 안전확보, 예산절감 등을 위해서는 내실있는 설계가 필수적이므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계전담부서(T/F)를 설치·운영(기존 보유인력 활용)

□ 시공상세도 발주청 보고 및 검토

- 주요 구조부의 가설시설물 등을 설치할 경우 안전성 검토를 포함한 시공상세도를 발주청에 보고토록하여 설계전담부서에서 검토

【 건설산업 부문 】

1. 부실시공업체 처벌강화

-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실시공으로 5명이상 사망 사고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강화

- 건설공사 부조리 행위로 인한 국가재산상의 손해 발생시에는 해당 건설기술자에게도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기술자 관리 강화

2. 다단계 하도급방지 대책 강구

□ 하도급거래 투명성 확보

- 원도급 공사정보 뿐만 아니라 하도급 공사정보까지 입력·관리하는“하도급공사정보망”을 구축하여 거래 투명성 확보

※ 현재 시스템 설계 완료, 하반기 본격 운영

□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처벌 강화

- 불법 재하도급에 대해서는 원도급 건설회사의 대표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하여 하도급 질서 확립